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592

발의연월일: 2024. 10. 7.

발 의 자: 강득구·김기표·김준형

박용갑 • 박홍배 • 이기헌

이학영 · 전현희 · 정성호

채현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임원 구성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 중임.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법률 제 호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당연직이사 외의"를 "당연직이사를 제외한"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 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사용자대표
- 2. 근로자대표
- 3.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 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7조(임원) ① ~ ③ (생 략) 제7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 유)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 **(4)**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 연직이사 외의 비상임이사는 연직이사를 제외한-----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 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 위원회가-----임이사는 사용자대표, 근로자대 ----. <후단 삭제> 표 및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 · 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 서 임명하여야 한다. <신 설> 1. 사용자대표 <신 설> 2. 근로자대표 <신 설> 3.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 제도 · 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 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신 설>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

	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
	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
	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